
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-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 총원(명)	공무수행 사인(명)	설치근거 규정(조항)
1	임원추천위원회	7명	7명	지방공기업법 제58조
2	이사회	6명	5명	지방공기업법 제62조
3	인사위원회	5명	5명	공단 인사규정 제41조
4	산업안전보건위원회	12명	2명	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

II. 법 제11조제1항제2호

-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연번	법인·단체·기관명	공무수행사인(명)	위임·위탁규정(조항)
1	'해당없음'		

III. 법 제11조제1항제3호

-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연번	파견인원(명)	파견근거규정(조항)
1	'해당없음'	

IV. 법 제11조제1항제4호

-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

연번	법인·단체 명	공무수행사인(명)	심의·평가규정(조항)
1	'해당없음'		